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참조
4. 검토의견 : 별첨참조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4월 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류기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1995. 4.

產業建設委員會
專門委員

大田廣城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條例案은 1995年 4月 15日 大田廣城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1995年 4月 17日 當委員會에 附屬되었음.

1. 提案理由

改正된 駐車場法 施行規則(1994. 5. 26 建設部令 第554號, 交通部令 第1026號)에서 市長에게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地域特性에 따라 彈力적으로 定하여 效率의인 駐車場業務를 推進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가. 公營有料駐車場 管理 受託者 選定時 非營利公益法人을 除外한 法人 또는 個人의 경우 再契約時는 隨意契約이 可能도록 하고자 함. (案 第6條 第3項)
- 나. 建築物 附設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基準 緩和에 대한 規定은 .現行 駐車場法 施行規則 第11條 規定에 明示되어 있어 關聯條項을 削除코자 함. (案 第18條의 5)
- 다. 公營駐車場 駐車料金 徵收 單位를 現行 30分에서 15分 單位로 하 고 級地를 2等級 分類에서 3等級 分類로 細分코자 함. (案 別表1)
- 라.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을 強化 (案 別表2)

3. 檢討意見

- 今番에 改正코자 하는 駐車場 條例中 改正條例案은 1994年 5月 26日 改正된 駐車場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에 依據 市長에게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地域特性에 맞도록 彈力的으로 정하여 效率의인 駐車場 業務를 推進하려고 하는 事案으로써
- 改正되는 條例의 主要內容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면, 첫째로, 公營有料駐車場 管理受託과 選定時 非營利法人을 除外한 法人 또는 個人的 경우 再契約時는 隨意契約이 可能토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河床駐車場의 경우 個人 또는 法人이 受託運營하는 駐車場은 現在 大부분 赤字運營을 하면서도長期的인 次元에서 採算性을 維持하고자 運營을 하고 있는 實情으로 再契約時 應札者가 없을 경우 管理에 따른 問題點을 事前豫防하고 駐車場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改正하는 것으로 判斷이 됨.
- 둘째로 建築物 附設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基準 緩和에 대한 規定을 現行 駐車場法 施行規則 第11條에 明示되어 있어 關聯 條項을 削除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妥當한 것으로 判斷이 되며,
- 셋째로 公營駐車場 駐車料金 徵收單位를 現行 30分에서 15分單位로 하고, 級地를 現行 2等級 分類에서 3等級 分類로 細分코자 하는 事案으로 이는 短時間 駐車場 利用者에 대한 負擔을 줄여주고 長期 駐車時 駐車料金을 加重함으로써 長期駐車를

防止하여 駐車 回轉率을 提高시킴과 동시에 都心進入車輛을 抑制하고 大衆交通手段 利用을 活性化하여 都心交通을 圓滑히 하 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고 또한 現行 大田市의 駐車料金 基準이 他市보다 脆弱한 狀態임을勘案할때 調整이 되어야 한다고 判斷이 됨.

그러나 現在의 駐車場이 대부분 1級地로서 너무나 廣範圍한 바, 車輛의 駐車率, 交通狀況등을 綿密히 分析하여 1級地를 縮小調整하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할것으로 思料됨.

- 끝으로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을 強化하고자 하는 事案은 車輛利用者가 많은 醫療, 宿泊, 販賣施設등에 대하여 駐車 需要를 附設駐車場 自體에서大幅 受容도록 하여 都心駐車難을 解消코자 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으로 判斷이 됨.
- 全般的으로 改正條例案을 檢討해 볼때 날로 深刻해져가는 都心 交通難 解消를 위하여는 適切한 駐車施設의 供給과 駐車需要 抑制施策이 調和롭게 並行되어야 한다고 보면, 駐車料金의 引上 및 附設駐車場 設置強化등의 必要性이 要請된다고 할 수 있으나 駐車料金 引上만으로는 駐車需要를 抑制할수 없음을勘案할때 駐車料金體制의 差等制 實施, 例를 들면 駐車時間帶別 料金 差等化, 駐車利用 時間別 料金 差等化, 車種·車輛規模別 差等制實施 및 大衆交通利用 促進을 위한 多角的인 方案등을 講究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가 됨.